

서울고등법원 2024. 10. 17 선고 2024나2002324 판결 [보증채무금]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24. 10. 17 선고 2024나2002324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12. 14 선고 2023가단223977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시대 담당변호사 최부휴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베이스스 담당변호사 이종우

변론 종결 2024. 9. 5.

판결 선고 2024. 10. 17.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12. 14. 선고 2023가단223977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46,050,542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9. 1.부터 2024. 10. 17.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부대항소 및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부터 2023. 3. 7.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원고)

제1심판결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판결의 약어도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와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당심에서 추가된 주장까지 함께 살펴보더라도 아래에서 수정한 부분을 제외한 제1심의 나머지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원고와 피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5쪽 제12행부터 제19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피고는 이 사건 합의각서에 따라 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① 300,000,000원과 ② 위 300,0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합의각서가 작성된 이후인 2017. 7. 1.부터 2018. 6. 30.까지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 연 25%(이 사건 합의각서에서는 이율을 월 2.5%로 정하였으나, 이는 당시 시행되던 이자제한법 최고이율을 초과하므로 당시의 이자제한법 최고이율을 적용한다)가 적용된 1년간의 이자 상당액 75,000,000원, ③ 위 ①, ②항의 금액 합계 375,000,000원에 대하여 2018. 7. 1.부터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제1심판결 제6쪽 제16행의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4) 원고는 이 사건 합의각서에 따른 E 등의 채무에 관한 변제금으로 2023. 2. 21. M로부터 68,650,078원, 2023. 3. 3. C로부터 9,484,084원, 2024. 6. 28. L로부터 142,297,091원, 2024. 8. 31. L로부터 30,000,000원을 각 지급받았으나, 1) 그 외에는 실제로 변제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다. 위와 같이 원고가 수령한 변제금은 이 사건 합의각서에 따른 E 등의 채무인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7. 1.부터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인 연 25%의 비율에 의한 이자와 지연손해금' 중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충당하기에도 부족하므로, E의 보증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각서에 따른 보증책임을 전부 이행할 의무가 있다.』

○ 제1심판결 제7쪽 제13행의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4) 설령 이 사건 합의각서에 따라 피고가 E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E 등에 대한 채권과 관련하여, ① 2023. 2. 21. M로부터 68,650,078원을 송금받았고, ② N 등으로부터 L가 변제공탁한 공탁금 220,420,587원을 수령할 권한을 위임받았으며, ③ C의 L에 대한 판결금 채권 220,593,724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는바, 위 금액 합계 509,664,389원(=

68,650,078원 + 220,420,587원 + 220,593,724원)은 원고가 E 등에 대한 채권의 변제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므로, E의 채무는 모두 변제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는 연대보증 채무도 소멸하였다.』

○ 제1심판결 제8쪽 제1행의 "합의각서"를 "합의각서(갑 제5호증)"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8쪽 제10행부터 제9쪽 제15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1) 이 사건 합의각서에 일부 오자가 있고, 그 내용 중 앞부분에 기재된 부분에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으나, ① 이 사건 합의각서 작성 당시 E 등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300,000,000원의 약속어음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각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이 모두 지난 상태였음에도 원고에게 기존 대여금 채무나 위 각 약속어음금 채무를 전혀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합의각서 하단에는 "위 각서인들(E, G, I, C 등을 의미한다)은 (중략) 위 300,000,000원과 매월 지급 월 이자 월 2.5%를 향후 1년간 지급할 것을 연대하여 보증인을 인감 첨부각서 날인할 것을 각서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이 사건 합의각서에 의하여 부담하는 주채무 및 보증채무를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향후 1년간의 월 2.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로 정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③ 한편, 이 사건 합의각서에 의하면, 300,000,000원은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의 합계금이고[이 사건 합의각서 중 상단의 "2015. 6. 26.부터 6회에 걸쳐서 차용한(2015. 6. 26.자 외 6건 공정증서) 300,000,000원" 부분], 이 사건 합의각서는 피고 등이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의 발행인 및 연대보증인의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형식으로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각 약속어음 채무의 유효함을 전제로 작성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합의각서는 이 사건 각 약속어음 채무가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E, G, I, C가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에 관하여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의 액면금 합계액인 3억 원과 이 금액에 대하여 향후 1년간의 이자 명목으로 월 2.5%로 계산한 돈을 연대하여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는 E의 채무를, J은 G의 채무를, K은 C의 위 채무를 각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이 사건 합의각서에서 정한 '300,000,000원에 대한 향후 1년간의 이자'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합의각서의 문언('매월 지급할 이자', '향후, 1년간의 이자', '향후 1년간 지급할 것을')이나 원고가 C의 계좌로 입금하여 E 등에게 빌려 준 돈의 액수,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의 액면금액 및

지급기일 등에 비추어 보면, E 등은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각서 작성일 이후 1년간 월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이자 명목으로 지급할 의사로 이 사건 합의각서를 작성하고, 피고 등도 E 등의 위 채무를 각 연대보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각서에 따른 주채무인 ①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의 액면금 합계액인 300,000,000원과 ② 위 300,000,000원에 대한 이 사건 합의각서 작성일 이후인 2017. 7. 1.부터 2018. 6. 30.까지 1년간 이자제한법 및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7. 11. 7. 대통령령 제28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이자율 연 25% 2)를 적용한 이자인 75,000,000원(= 300,000,000원 × 1년 × 25%) 및 ③ 위 ①, ②항의 금액 합계 375,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E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한편, 피고는 이 사건 합의각서가 작성되기 이전인 2017. 5.경 작성된 합의각서(갑 제5호증, 이하 '종전 합의각서'라 한다)를 근거로 '피고의 보증책임 범위가 종전 합의각서에 E의 책임범위로 기재된 300,000,000원의 30%인 90,000,000원에 한정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①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종전 합의각서가 원고의 동의 하에 작성되거나 사후 원고의 동의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종전 합의각서가 원고에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는 점[원고는 이에 관하여, 종전 합의각서의 경우 E과 피고 등이 일방적으로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를 각자 일정 부분만 부담하여 책임지는 것으로 작성해 와서 원고가 이에 동의하지 않았고, 이후 E과 피고, C 등이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를 연대하여 책임지는 것으로 이 사건 합의각서를 새롭게 작성해 와서 원고가 이에 동의하였다고 주장한다], ② 설령 종전 합의각서가 원고에 대하여 유효하다고 가정하더라도, 이후 원고와 E, 피고 등 사이에 이와 양립할 수 없는 내용의 이 사건 합의각서가 작성된 이상 나중에 작성된 이 사건 합의각서의 내용대로 E의 주채무 및 피고의 보증채무 범위를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점(대법원 2020. 12. 30. 선고 2017다17603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판결 제10쪽 제17행의 "소멸시효완성은"을 "소멸시효는"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2쪽 제4행부터 제13쪽 제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라. 변제 항변 등에 대한 판단

1) 원고가 2023. 2. 21. M로부터 송금받은 68,650,078원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23. 2. 21. M로부터 68,650,078원을 E 등에 대한 채권에 관한 변제금으로 송금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의 E 등에 대한 채권 중 68,650,078원은 위 변제로 소멸되었다.

2) 원고가 N 등으로부터 수령 권한을 위임받은 L의 변제공탁금 220,420,587원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이에 관하여, E 등이 L를 상대로 제기한 정산금 등 청구 소송(서울고등법원 2017나2026186, 이하 '관련 정산금 소송'이라 한다)에서 E의 승계참가인 N을 비롯한 관련 정산금 소송의 원고들이 일부 승소하였고, 이에 따라 L가 N 등 관련 정산금 소송의 원고들을 위하여 해당 판결의 인용금액 합계 220,420,587원을 변제공탁하였는데, N을 비롯한 관련 정산금 소송의 원고들이 위 변제공탁금의 수령권한을 원고에게 위임하였으므로, 원고의 E에 대한 채권은 220,420,587원만큼 변제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갑 제8,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E 등이 L를 상대로 제기한 관련 정산금 소송에서 2023. 2. 9. 'L는 원고 겸 원고 E, G의 승계참가인 N에게 67,368,661원, 원고 겸 원고 G의 승계참가인 C에게 8,246,645원, 원고 I의 승계참가인 O에게 14,100,279원, 원고 I의 승계참가인 P에게 47,227,122원, 원고 E의 승계참가인 Q에게 39,370,007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자, L가 2023. 2.경 관련 정산금 소송에서 인용된 원리금 220,420,587원을 공탁한 사실, 3) 이후 관련 정산금 소송의 원고 내지 원고승계참가인인 O, Q, P, N, G이 2023. 2.경 및 3.경 원고에게 E 등의 채무를 변제하는 취지에서 위와 같이 L가 공탁한 돈을 원고가 수령할 수 있도록 위임장 내지 동의서를 작성해 준 사실은 인정된다.

다) 그러나 앞서 본 위 증거들 및 갑 제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의 이 부분 변제 항변 중 원고가 2023. 3. 3. C로부터 E 등에 대한 채권의 변제금으로 수령하였다고 자인하는 9,484,084원 부분은 이유 있으나,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변제받은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변제 항변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따라서 원고의 E 등에 대한 채권 중 9,484,084원은 위 변제로 소멸되었다.

- ①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와 관련하여 다른 채권을 양도하는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 또는 변제의 방법으로 양도되는 것으로 추정할 것이지 채무변제에 갈음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어서, 그 경우 채권양도만 있으면 바로 원래의 채권이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고 채권자가 양도받은 채권을 변제받은 때에 비로소 그 범위 내에서 채무자가 면책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4099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 스스로 2023. 3. 3. C로부터 E 등에 대한 채권의 변제금으로 수령하였다고 자인하고 있는 L의 C(관련 정산금 소송에서 원고 겸 원고 G의 승계참가인임)에 대한 공탁금 9,484,084원(갑 제10, 12호증,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년 금 제606호) 이외에 나머지 공탁금의 경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주장하는 위 나머지 공탁금을 원고가 실제로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② 원고는 이에 관하여, 위와 같이 C로부터 지급받은 9,484,084원 이외에 나머지 공탁금의 경우 피공탁자의 조세체납 등으로 인하여 실제로 원고가 피공탁자를 대신하여 수령할 수 있는 돈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L는 I(관련 정산금 소송의 승계참가인 O, P의 승계 전 원고임)를 피공탁자로 하여 관련 정산금 소송의 I 관련 인용금액 70,400,494원을 공탁하면서 I의 국세체납으로 인한 압류 등이 있음을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의 집행공탁을 하였는데, 위 공탁서에 기재된 I의 국세체납액이 162,903,730원에 이른다. 따라서 실제로 원고는 I의 선순위 국세체납액으로 인하여 O, P의 공탁금 수령에 관한 위임장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대신하여 위 공탁금을 수령할 수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
- 3) 원고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C의 L에 대한 판결금 채권 220,593,724원 부분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이에 관하여, 이 사건 합의각서의 작성자인 C는 L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 소송(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가단138817, 이하 '관련 양수금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원고는 관련 양수금 소송의 판결금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는바, 원고는 위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L에 대하여 위 판결금 채권의 2024. 4. 9.까지 원리금 220,593,724원을 변제받을 수 있는 추심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원고의 E에 대한 채권은 위 220,593,724원만큼 변제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 나)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C는 L를 상대로 관련 양수금 소송을 제기하여 위 소송에서

2023. 9. 19. 'L는 C에게 127,023,33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원고는 발행인 E, 연대보증인 C, F, G인 액면금 450,000,000원의 약속어음에 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R 증서 2018년 제598호 공정증서 정본(갑 제7호증)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23. 7. 10. C를 채무자, L를 제3채무자로 하여 관련 양수금 소송의 판결금 채권 중 450,055,200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서울남부지방법원 2023타채1877)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위 판결금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위 판결금 채권을 추심할 권능만 부여받았을 뿐이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위 판결금 채권 자체를 이전받거나 위 판결금 채권에 해당하는 돈을 수령한 것이 아니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의 E에 대한 채권이 위 220,593,724원만큼 변제로 소멸하였다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그런데 원고는 관련 양수금 소송의 항소심판결(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6. 20. 선고 2023나40824 판결) 선고 후인 2024. 6. 28. L와 사이에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관련하여, '관련 양수금 소송의 제1심판결 및 항소심판결에 따른 2024. 6. 28. 기준 판결금(추심금)은 원금 127,023,337원, 지연손해금 45,606,930원의 합계 172,297,091원이다. L는 원고에게 2024. 6. 28. 위 추심금 중 142,297,091원을 지급하고, 2024. 8. 31.까지 나머지 30,00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합의각서에 따른 E 등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위 합의금 172,297,091원을 변제받았다고 자인하고 있다(원고의 2024. 8. 1.자 준비서면 제10쪽, 2024. 10. 14.자 참고서면 제2쪽 참조).

라)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변제 항변 중 원고가 위 합의서에 따라 L로부터 변제받았다고 자인하고 있는 2024. 6. 28.자 142,297,091원, 2024. 8. 31.자 30,000,000원 부분은 이유 있으나,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변제받은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변제 항변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따라서 원고의 E 등에 대한 채권 중 172,297,091원은 위 변제로 소멸되었다.

4) 변제의 범위(변제충당)

이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 M[위 1)항의 변제금 2023. 2. 21.자 68,650,078원], C[위 2)항의 변제금

2023. 3. 3.자 9,484,084원], L[위 3)항의 변제금 2024. 6. 28.자 142,297,091원, 2024. 8. 31.자 30,000,000원] 사이에 위 각 변제금의 변제충당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결국 위 각 금원을 민법 제497조, 제477조가 정한 법정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라 각 변제일을 기준으로 충당하면, 아래와 같이 마지막 변제일인 2024. 8. 31. 기준 원고의 E 등에 대한 채권의 잔존 원금은 146,050,542원이 된다.

가) 이 사건 합의각서에 따른 주채무와 보증채무의 범위가 ①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의 액면금 합계액인 300,000,000원과 ② 위 300,000,000원에 대한 이 사건 합의각서 작성일 이후인 2017. 7. 1.부터 2018. 6. 30.까지 1년간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인 연 25%를 적용한 이자 75,000,000원 및 ③ 위 ①, ②항의 금액 합계 375,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이 사건 합의각서에서는 이행기에 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 375,000,000원은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당사자가 이행청구를 받은 때 비로소 지체책임을 지게 된다.

나)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E, G, I, C는 이 사건 합의각서에서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하여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있다(민법 제416조). 그런데 원고가 제1심의 지급명령 절차에서 2022. 9. 22. 피고와 C에 대하여 '(이 사건 합의각서에 기재된 원금인)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지급명령 정본이 C에게 2023. 2. 23. 도달한 사실, 이후 원고가 제1심 소송 절차에서 피고와 C에 대하여 '(이 사건 합의각서에 기재된 원금 및 이자인) 37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2023. 5. 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2023. 5. 10. 위 변경신청서가 피고와 C의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고,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그 이전에 연대채무자인 E, G, I, C에 대하여 이 사건 합의각서에 따른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합의각서에 따라 E의 연대보증자로서 부담하는 원고에 대한 E의 채무는 '375,000,000원 및 그중 300,000,000원에 대하여는 C에 대한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 날인 2023. 2. 24.부터, 75,000,000원에 대하여는 C에 대한 2023. 5. 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인 2023. 5. 11.부터 각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

된다.4) 라) 위와 같은 E의 채무에 대하여, 2023. 2. 21.자 M의 변제금 68,650,078원, 2023. 3. 3.자 C의 변제금 9,484,084원, 2024. 6. 28.자 L의 변제금 142,297,091원, 2024. 8. 31.자 L의 변제금 30,000,000원을 민법 제497조, 제477조가 정한 법정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라 각 변제일을 기준으로 충당하면 아래와 같다.

(1) 위 1)항 기재와 같은 M의 변제금 2023. 2. 21.자 68,650,078원은 위 이자 75,000,000원에 충당되었다.

(2) 위 2)항 기재와 같은 C의 변제금 2023. 3. 3.자 9,484,084원은 ① 잔존 이자 6,349,922원, 5) ② 300,000,000원에 대한 2023. 2. 24.부터 2023. 3. 3.까지의 지연손해금 328,767원6) 에 먼저 충당되고, 남은 변제금 2,805,395원7) 은 원금 300,000,000원에 충당되었다(이로써 E의 채무 중 이자 7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은 모두 소멸되었다).

(3) (가) 위 3)항과 같은 L의 변제금 2024. 6. 28.자 142,297,091원은 잔존 원금 297,194,605원8) 에 대한 2023. 3. 4.부터 2024. 6. 28.까지의 지연손해금 19,622,986원9) 에 먼저 충당되고, 남은 변제금 122,674,105원10)은 잔존 원금 297,194,605원에 충당되었다.

(나) 위 3)항과 같은 L의 변제금 2024. 8. 31.자 30,000,000원은 잔존 원금 174,520,500원11)에 대한 2024. 6. 29.부터 2024. 8. 31.까지의 지연손해금 1,530,042원12)에 먼저 충당되고, 남은 변제금 28,469,958원13)은 잔존 원금 174,520,500원에 충당되었다.

마) 결국 마지막 변제일인 2024. 8. 31. 기준 피고가 이 사건 합의각서에 따른 E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변제하여야 하는 연대보증채무는 잔존 원금 146,050,542원14)이 남게 되었다.

마.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각서에 따라 연대보증한 E의 원고에 대한 채무 중 변제 후 남은 잔존 원금인 146,050,542원 및 이에 대하여 마지막 변제일 다음 날인 2024. 9. 1.부터(이자 7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원금 300,000,000원 중 일부 및 이에 대한 2024. 8. 31.까지의 지연손해금은 이미 변제충당되었으므로, 잔존 원금에 대하여 그 다음 날인 2024. 9. 1.부터의 지연손해금이 인정된다)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0. 17.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따라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당심에서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하기로 한다(변론종결 후에 제출된 원고의 2024. 10. 14.자 참고서면 등을 살펴보더라도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 어렵다).

재판장판사김시철

판사김옥곤

판사이동현

1) 원고는 2024. 8. 1.자 준비서면에 'L로부터 2024. 6. 28. 142,297,091원을 지급받았고, 2024. 8. 31. 30,000,000원을 지급받을 예정'이라고 기재하였으나, 2024. 10. 14.자 참고서면에서 '위 돈 합계 172,297,091원(= 142,297,091원 + 30,000,000원)을 모두 추심하였다'고 기재하였다.

2) 계약상의 이자로서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인바(이자제한법 제2조 제3항), 원고는 이자제한법을 초과한 이율에 의한 이자 약정이 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피고에게 300,000,000원에 대하여 연 25%의 이자만 청구하고 있다.

3) 원고도 L가 2023. 2.경 관련 정산금 소송의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돈을 공탁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원고의 2023. 9. 22.자 준비서면 제9쪽 참조).

4) 비록 원고가 제1심 소송절차에서 C에 대한 소를 취하하고, C의 소송대리인이 이에 동의하여 이 사건에서 C에 대한 소가 취하되었으나(제1심의 2023. 8. 24.자 변론조서 참조), 민법 제387조 제2항에서 정한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 이행청구로 인한 이행지체의 효과와 관련하여, 이행청구소송의 제기에 의한 채무자에 대한 소장부분의 송달, 독촉절차에서 채무자에 대한 지급명령의 송달은 이행청구와 동일한 효력이 있고, 소장부분의 송달 등이 있으면 그 소의 제기가

소송상 무효이거나 그 후 소가 취하되더라도 이행청구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주석 민법, 채권총칙(1)(제5판), 한국사법행정학회(2020), 제454쪽 참조].

$$5) = 75,000,000\text{원} \sim 68,650,078\text{원}$$

$$6) = 300,000,000\text{원} \times 5\% \times 8\text{일}/365\text{일}(\text{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7) = 9,484,084\text{원} - 6,349,922\text{원} - 328,767\text{원}$$

$$8) = 300,000,000\text{원} \sim 2,805,395\text{원}$$

$$9) = 297,194,605\text{원} \times 5\% \times (1\text{년} + 117\text{일}/365\text{일})$$

$$10) = 142,297,091\text{원} - 19,622,986\text{원}$$

$$11) = 297,194,605\text{원} - 122,674,105\text{원}$$

$$12) = 174,520,500\text{원} \times 5\% \times 64\text{일}/365\text{일}$$

$$13) = 30,000,000\text{원} - 1,530,042\text{원}$$

$$14) = 174,520,500\text{원} \sim 28,469,958\text{원}$$